

결 정

2018 - 1045 신문윤리강령 위반
광주타임즈 발행인 김 명 삼

주 문

광주타임즈 2018년 2월 7일자 1면 「가래떡 뽑기 한창」 제목의 사진과 사진설
명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 유



광주타임즈 2월 7일자 1면

광주타임즈의 위 1면 사진은 뉴시스가 2014년 1월 26일 16시35분에 송고한

「닷새 앞으로 다가온 설」 제목의 사진 기사를 4년 이상 지난 시점에 전제한 것이다. 그러면서 사진 설명을 당초 뉴시스 보도 사진의 『민족 명절 설을 닷새 앞둔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한 방앗간에서 상인이 가래떡을 뽑고 있다.』에서 『민족 명절 설을 앞두고 6일 오후 광주지역의 한 방앗간에서 상인이 가래떡을 뽑고 있다.』로 멋대로 바꿔 달았다. 사진 출처 표기도 없다.

독자들을 기만한 거짓 보도로, 신문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전문,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 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년 3월 14일

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

위 원 장	김 용 담	김용담
위 원	정 승 호	정승호
	장 명 국	장명국
	박 재 현	박재현
	장 인 철	장인철
	김 규 식	김규식
	강 희	강희
	하 윤 수	하윤수
	김 영 모	김영모
	박 미 경	박미경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보도기사(해설기사 포함)는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기사는 사회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진실을 적극적으로 추적·보도해야 한다.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 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언론사와 언론인은 통신 기사를 자사 기사와 구별하여 출처를 밝혀 사용하여야 하며 사소한 내용을 변경하여 자사 기사로 바뀌서는 안된다.